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18 발의연월일: 2024. 11. 22.

발 의 자: 안호영 · 이학영 · 이원택

어기구 · 윤준병 · 주철현

정을호 • 박희승 • 소병훈

박홍배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의 진흥과 김치문화의 계승·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.

이러한 종합계획은 정책적 필요에 따라 특정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인·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수단을 제시하는 것으로서계획 수립 시 해당 계획의 정책 대상이나 관련 기관·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4조).

법률 제 호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김치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⑤ | 제4조(종합계획의 수립) ① ~ ⑤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<u><신 설></u> |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합 |
| |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김치산업 |
| | 과 관련된 단체 등의 의견을 들 |
| | <u> 어야 한다.</u> |
| <u>⑥</u> (생 략) | 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 |